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민연금기금 재원에 정부의 출연금 추가 〉
■ 김동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533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국민연금기금 재원에 정부의 출연금 추가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4
다. 관계 기관 의견	9

I. 개요

1. 김동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053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동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8. 11.

(3) 회 부 일 : 2026. 8.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을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하여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일시적 경기 호황이나 특정 산업의 성장에 따라 세입이 증가할 경우 발생하는 세계잉여금 일부를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재원으로 적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세계잉여금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에 정부의 출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1조제2항제4호 신설).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동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국민연금기금 재원에 정부의 출연금 추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에 ‘정부의 출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1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생략)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3. (생략) <u><신설></u> <u>4.</u> (생략)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u>4. 정부의 출연금</u> <u>5.</u> (현행 제4호와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국가재정법」 제90조에서는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이월액 등을 공제한 금액인 ‘세계잉여금’을 교부세·교부금의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및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 밖의 금액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남은 금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참고로, 2021회계연도부터 2025회계연도까지 최근 5년간 세계잉여금은 총 24조 5,847억원인 것으로 나타남.

1)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補填)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②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2.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⑥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이를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회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이를 할 수 있다.

⑧세계잉여금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⑨ 정부는 매년 제61조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전까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산출하고 그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최근 5년간 세계잉여금 현황: 2021~2025 >

(단위: 억원)

구분	세계 잉여금	교부세·교부금 정산	국가채무 상환 (공적자금관리기금 출연 포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다음 연도 세입 이입
계	245,847	118,677	64,856	34,802	27,511
2025	828	828	-	-	-
2024	4,458	-	2,273	2,184	-
2023	364	364	-	-	-
2022	60,248	4,103	28,634	-	27,511
2021	179,949	113,382	33,949	32,618	-

자료: 재정정보공개시스템, <<https://openfiscaldata.go.kr>>.

□ 개정안은 세계잉여금 중 「국가재정법」 제9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기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뿐 아니라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김동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기금의 재원에 ‘정부의 출연금’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 제고에 요구되는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참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34호) >

현 행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0534호)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 계획) ① ~ ④ (생략)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 계획)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현행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0534호)
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u>사용할 수 있다.</u>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u>출연</u>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이를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 ⑨ (생략)	----- ----- --<u>사용하거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u> ⑥ ----- -----<u>출연</u> 및 제5항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에의 <u>출연은</u>----- ----- ----- ----- ⑦ ~ ⑨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현행법에서는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기금을 설치하되,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및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그 재원을 규정하고 있는데,²⁾

2) 「국민연금법」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하 이 장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연금보험료
2. 기금 운용 수익금
3. 적립금
4.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개정안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으로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경우 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53년경까지 기금 수지가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인데(연평균 기금투자수익률 5.5% 가정),

이러한 가운데 세계잉여금 중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기에 앞서 수지흑자인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재정 운용 전반의 포괄적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둘째, 현행법에서 출산크레딧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³⁾ 각각의 비용에 대한 일반회계의 부담률이 높지 아니한 실정을 고려할 때, 안 제101조제2항제4호가 신설되더라도 정부의 기금에 대한 출연이 보장되는 것은 아닌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출산크레딧에 따른 비용은 일반회계(30%)와 기금(70%)이 분담하고 있고, 공단의 국민연금사업 관리·운영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가 연간 100억원(정액)을 부담하고 있어 2025회계연도

3) 「국민연금법」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제87조(국고 부담) 국가는 매년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결산 기준 공단 관리·운영비(5,720억 5,700만원)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율은 약 1.75%임.

< 최근 5년간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지출액) 및 일반회계 지원율 >

(단위: 백만원, %)

구분	'21결산	'22결산	'23결산	'24결산	'25결산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A)	526,571	536,285	543,811	548,622	572,057
공단관리운영 인건비 (7378-605)	405,326	412,260	419,981	423,233	441,021
공단관리운영 기타경비 (7378-607)	97,804	99,981	101,051	102,395	101,976
공단관리운영 정보화운영비 (7378-614)	23,441	24,044	22,779	22,994	29,060
일반회계 전입금 (B)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일반회계 지원율 (B/A)	1.90	1.86	1.84	1.82	1.75

자료: 보건복지부

- 셋째, 정부가 기금에 출연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정부의 고관여를 정당화하는 근거이자 독립성·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수용

-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특히 지속 증가하는 관리·운영비와 군복무·출산크레딧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⁴⁾

문 의 처

02)6788-5506

4) 관리·운영비: ('15) 3,558억원 → ('20) 5,291억원 → ('26) 6,174억원 (국고지원은 2010년부터 100억원 동결)